

『구민과 소통하는, 희망광진!』



광진구의회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

『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예고기간 : 2015. 10. 7.(수) ~ 10. 13.(화) [7일간]
- 나. 발 의 자 : 고양석, 김기선, 김기란, 오현정 의원
- 다. 예고방법 :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- 라. 기타사항 : 기한내 미제출시 「의견없음」으로 간주

따로붙임 입법예고문 4부. 끝.

주무관 박해영 의사팀장 이기봉 의회사무국장 10/07 오정식

협조자 전문위원 정민화

시행 광진구의회-100204 () 접수 (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구의회 / <http://council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1446 /전송 02-454-0438 / 대시민공개

“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, 길찾기가 즐거워집니다”